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1533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A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유나

변론 종결2024. 3. 19.

판결 선고2024. 5. 21.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재산분할약정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7/50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5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4. 접수 제1935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2017. 11. 9.자 재산분할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4. 접수

제1935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의 채권

1) C은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7. 8.경 구속 기소되어 2018. 2. 9. 1심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 2018. 8. 17. 그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등은 아래 표 '최초 구매일자~마지막 구매일자'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2017. 8. 23. C을 포함한 주식회사 D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7656), 위 사건에서 2020. 6. 19. 'C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362,321,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라 C이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라 한다). 위 사건에서 원고 등에게 인용된 금액은 아래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1	A	2014. 11. 4.~2017. 1. 3.	210,620,000
2	F	2016. 10. 31.~2017. 1. 3.	89,580,000
3	G	2016. 5. 6.~2016. 5. 25.	42,360,000
4	H	2016. 5. 6.~2017. 1. 3.	120,190,000
5	I	2016. 1. 28.~2016. 11. 29.	59,830,000
6	J	2016. 11. 29.	52,200,000

1	A	2014. 11. 4.~2017. 1. 3.	210,620,000
7	K	2016. 8. 23.~2016. 11. 29.	38,360,000
8	L	2016. 5. 25.~2017. 1. 3.	102,720,000
9	M	2016. 6. 30.~2016. 9. 22.	41,470,000
10	N	2016. 9. 22.~2017. 1. 3.	138,860,000
합계	896,190,000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과 피고는 1974. 1. 11.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로 망 O(1973년생, 2015년 사망), P(1975년생)을 두었다.

2) C은 2017. 8.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7. 9. 5. 구속된 상태인 C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7년318678), 위 사건에서 2017. 10. 30.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한다.

3. 재산분할로 2017. 11. 30.까지,

가.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는 C에게 312,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고와 C은 향후 이 이혼 관련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1. 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1.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약정1)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2017. 8. 23.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C은 피고와 이혼하면서 2017. 11. 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은 원고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합계 2,362,321,63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있었던 이 사건 조정 성립일 당시 원고 등은 허정에 대하여 합계 896,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C의 무자력 여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이 원고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원금만 보더라도 합계 2,362,321,63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소유하던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1,231,120,001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소유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C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재산분할의 상당성 가)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등 참조). 또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등 참조).

나) 분할대상재산

(1)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2, 13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은행, R은행, S은행, T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C과 피고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C과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는 1,840,984,651원(= 1,231,120,001원 + 609,864,650원)이다.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	950,000,000) 피고와 C은 이혼조정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875,000,000원이라고 하였으나, 당시 제출된 시세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일반 평균가는 950,000,000원이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본다.	609,864,650
예금채권	271,670,001) U은행 108,368,130원, S은행 65,580,850원, R은행 60,149,026원, T은행 37,571,995원(원고 등은 2023. 7. 7.자 준비서면 3쪽에서 T은행 예금채권을 R은행 예금채권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차량	2,320,000		
리조트회원권	7,130,000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	950,000,0002) 피고와 C은 이혼조정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875,000,000원이라고 하였으나, 당시 제출된 시세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일반 평균가는 950,000,000원이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본다.	609,864,650
소계	1,231,120,001		
소극재산	없음	0	0

(2)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C과 피고의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와 C은 2명의 자녀(1명은 2015년 사망)를 두고 약 4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혼인기간 동안 C이 약 30년간 V공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D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등 주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혼인생활 내내 부부 공동재산은 전적으로 피고의 적극적인 저축과 부동산 투자로 이루어졌고, 혼인생활 초기에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의 부모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부부공동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와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와 C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피고와 C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와 청산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와 C의 적법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50%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초과부분의 계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의 합계액이 1,840,984,651원이므로 피고에게 분할되어야 하는 재산가액은 920,492,325원($= 1,840,984,651\text{원} \times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런데 피고와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피고가 C에게 3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피고에게 분할된 재산가액은 1,247,864,650원($= 609,864,650\text{원} + 950,000,000\text{원} - 312,000,000\text{원}$)이고, 따라서 327,372,325원($= 1,247,864,650\text{원} - 920,492,325\text{원}$)이 더 분할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당한 재산분할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즉 327,372,325원 부분에 관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3) 사해의사와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참조).

나) 피고가 C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당시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원고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C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C에 대한 소장 부분의 송달이 지연되었더라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C은 공소사실 자체로도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예상할 수 있었고, 공범들에 대한 소장은 대부분 송달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소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C으로서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나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할 당시 C은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도 C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알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인 327,372,325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17/50 지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 금액 327,372,325원 ÷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950,000,000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7/5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4. 접수 제1935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수아

별지

- 1) 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란에 '2017. 11. 9. 재산분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조정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재산분할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피고와 C은 이혼조정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875,000,000원이라고 하였으나, 당시 제출된 시세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일반 평균가는 950,000,000원이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본다.
- 3) U은행 108,368,130원, S은행 65,580,850원, R은행 60,149,026원, T은행 37,571,995원(원고 등은 2023. 7. 7.자 준비서면 3쪽에서 T은행 예금채권을 R은행 예금채권으로 잘못 기재하였다).